

協會

1. 제2007-2차 이사회 개최

1) 경과보고

가. 제56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제13회 학예연구원회 총회 결과 보고

- 일 시 : 2007년 4월 18일(수) ~ 4월 20일(금)
 - 장 소 : 대구대학교박물관 본관(성산홀) L층 대강당
 - 주 관 : 대구대학교박물관

나. 제57회 추계학술발표회 및 제56회 정기총회 준비 보고

-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 10월 20일(토)
 - 장 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 주 관 : 충남대학교박물관

다. 고문화 69집 간행

- 6월 29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록
 - 일반논문 4편 외 휘보·학예연구원명부

라. 신입회원관 실사 결과 보고

2) 토의안건

가. 협회 정관 개정에 관한 논의

- 협회 소재지 관련 사항 : 정관 “제1장 총칙 /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다는 규정에 의해 현재 협회 사무국이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재지는 전임 한양대학교박물관으로 되어있음.
- 학예연구원회 이사 증원 관련 사항 : 정관 “제3장 임원 / 제6조 본회 산하기구인 학예연구원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한다는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예연구원회 회장 이외에 학예연구원회에서 1인의 이사를 추가로 두고자함. 1차 이사회 회의 결과 학예연구원회 회장 한명만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으나, 협회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학예연구원 이사 1인 정도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예연구원회의 견의를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차후 정관을 개정을 통해 승인하기로 하였기에 이의 개정이 필요.
- 정관 개정에 관련한 “사원결의 확인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 논의결과 : 제1장 총칙/ 제2조, 제3장 임원/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등을 여중철·박순발 이사에게 분명한 내용전달을 위해 상충된 문구 수정과 통일을 의뢰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

나. 김건호(삼육대박물관장) 감사의 자격여부 확인

- 1차 이사회 회의 결과 삼육대학교박물관에 정식으로 관장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학칙상의 편제되어 있는 정식직제 및 보직발령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삼육대학교박물관으로부터 “신분 및 직제 조회 회답”의 공문으로 회신을 받음.
- 논의결과 : 대학박물관의 실질적 대표는 교원인 관장이 하며, 관장이 아니면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감사도 될 수 없다.

다. 신입회원관 가입신청

- 신청기관 : 대구보건대학교 임당박물관(2007년 7월 24일자 신청)
- 현장실사위원 선정 : 여중철 이사(영남대학교박물관)
- 현장실사일시 :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공문 발송
- 최종심의 : 현장실사위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가입승인

라. 대학박물관 발굴조사 요건에 관한 논의

- 논의 결과 : 현재 대학박물관의 발굴조사 자격요건인 전임연구원 4인은 무리한 사항이며 문화재청에 2인으로 축소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
- 현재 대학박물관은 구제발굴전문기관과 차별성을 떠므로, 대학박물관의 발굴제한 일수인 150일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발굴 실시 기간도 원칙적으로 방학 중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교육대학교 박물관 회원 자격 논의

- 교육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인력과 시설의 미비에 의해 정상적인 박물관의 운영과 협회 회원으

로서의 활동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고, 일부 기관은 다년간 협회비 미납 상태에 있음. “한대 박 2007-32 회원 자격정지 통보”를 통해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박물관의 소명기회를 부여함.

- 해당 4개 교육대학교 박물관 회신 사항(춘천교대 외 3개교는 유선회신)
 -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 : 회원자격 유지 희망(03년부터 미납)
 - 광주교육대학교 박물관 : 회원자격 유지 희망(01년부터 미납/ 05년, 07년 회비납부)
 - 청주교육대학교 박물관 : 회원자격 유지 희망(02년부터 미납)
 - 춘천교육대학교 박물관 : 회원자격 유지 희망(05년부터 미납)
- 특정 연도부터 협회비의 미납 사유는 해당기간 중 박물관의 잠정적 폐쇄 및 담당 학예연구원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미납 회비의 징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논의결과 : 미납된 회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손처리를 하여 소명기회를 주기로 결의
- 단,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한 요건촉구공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송하기로 함.

바. 제57회 추계학술발표회 발표 주제 선정 : “대학박물관과 청소년문화”

- 예우 차원의 기조강연은 실시하지 않기로 함.
- 회원교 전체에 주제에 따른 발표자 신청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발표자를 더해 선정하기로 결의

3) 기타안건

가. 2007 ICOM총회 및 UMAC 참가 지원

- 장소·일시 : 오스트리아 비엔나 2007년 8월 19일 ~ 8월 24일
- 주제 : Universities in Transition – Responsibilities for Heritage
- 참가 희망자 : 고려대학교박물관장 최광식(발표자)
 - 공군사관학교박물관장 김영주
 - 상명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이정선
- 지원사항 : 최광식 이사를 단장으로 하여 참가신청자 3인에게 각각 백만원 지원
- 귀국 후 반드시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작성

나. 『고문화』 투고 매수 논의

- 여타 학술지에 비해 적은 논문 투고 매수 제한으로 논의가 필요.
- 투고매수는 원고지 200매 이내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250매까지 할 수 있으나, 일십만원의 초과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2006년도 회비 미납교 현황

- 조속한 시일내에 미납된 회비가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

2. 제56차 정기총회

1) 성원보고

- 보고내용 : 총 101개 회원관 중 61개 회원관(위임 41개관 포함)이 참석하여 제적과반수를 넘어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2) 주요업무 경과보고

(1) 회의 결과 보고

- 가. 제2007-1차 이사회 개최 (2007년 4월 18일 경산시 송정)
- 나.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2007년 6월 12일 인터넷)
- 다. 제2007-2차 이사회 개최 (2007년 8월 9일 서울역사 T-월 중식당)
- 라. 제2007-1차 학예연구원회 운영위원회(2007년 3월 16일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2) 학술발표회 및 총회

- 가. 제56회 춘계학술발표회 개최
- 일 시 : 2007년 4월 19일(목) 9:00~17:20
- 장 소 : 대구대학교 본관 성산홀
- 주 제 : 대학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
- 발 표 : 총 8편 발표

나. 제12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06년 4월 19일(목) 17:30~18:00
- 장 소 : 대구대학교 본관 성산홀
- 회의내용
 - 1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2007년 제56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제13회 학예연구원회 총회 개최지 논의
⇒ 강릉대학교 박물관
 - 2008년 해외연수지 선정 ⇒ 중국 운남성

(3) 신입회원관 가입 심의 결과 보고

- 신 청 기 관 : 경북과학대학박물관(2006년 10월 31일자 신청)
충주대학교박물관(2006년 11월 14일자 신청)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2007년 3월 23일자 신청)
- 현장실사위원 : 경북과학대학박물관 - 여중철 이사
충주대학교박물관 - 장준식 이사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 장준식 이사
- 현장 실사 일시 : 경북과학대학박물관(2007년 8월 6일 실사)

충주대학교박물관(2007년 4월 11일 실사)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2007년 8월 3일 실사)

(4) 일반 업무

가. 고문화 69집 출간

- 고문화 학술진흥재단 학술등재지로 선정(2007년 1월 1일)
- 고문화 69집 발간 : 2007년 6월 29일(180page)
 - 배포 : 2007년 8월
 - 개제논문편수 : 논문 4편

나. 각종 정책 의견 제시 활동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제출처 :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 제출일시 : 2007년 1월 9일
 - 전문은 (공문 한대박 2007-1호) 참조
- 문화재위원회 위원 대상 인사 추천
 - 제출처 : 문화재청 정책과
 - 제출일시 : 2007년 3월 15일
 - 전문은 (공문 한대박 2007-10호) 참조
-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위한 T/F팀 구성계획 및 팀원 추천
 - 제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계획팀장
 - 제출일시 : 2007년 4월 2일
 - 전문은 (공문 한대박 2007-17호) 참조
-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및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시정 요청
 - 제출처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한국박물관협회
 - 제출일시 : 2007년 4월 23일
 - 전문은 (공문 한대박 2007-23, 24, 25호) 참조
- 대학박물관 발굴조사 자격요건에 관한 건의
 - 제출처 :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 제출일시 : 2006년 10월 9일
 - 전문은 (공문 한대박 2007-67호) 참조

다. 남북학술교류를 위한 학술지 제공 사업 참가

- 요청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 시행 : 2007년 7월 이후 발행 학술지
- 발행 학술지 각 3부씩 재단에 송부

라. 제11회 학예연구원회 해외연수 실시

○ 주 제 : 중국 사천성 일대 및 박물관 탐방

○ 일 시 : 2007년 2월 2일 ~ 8일(6박 7일간)

○ 지 역 : 중국 사천성 성도 및 중경 일대

마. 2007 UMAC 비엔나 대회 대표자 파견 보고

○ 참가자 : 최광식(고려대학교박물관장)

○ 주 제 : "Universities in Transition – Responsibilities for Heritage"

○ 일 정 : 2007년 8월 19일 ~ 8월 24일

○ 장 소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지원금 : 100만원(서울-비엔나 왕복 항공료 일부)

(5) 2007년도 결산보고

○ 기 간 : 2007년 1월 10일 ~ 10월 18일

⇒ 2007년도 협회비 집행과 결산보고 사항에 대한 이의가 없음.

3) 2007년도 감사 결과 보고

○ 감 사 : 김권구(계명대학교박물관장)

○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 내 용 : 별지 참조

⇒ 2007년도 협회 운영 · 학보발간 · 협회비의 집행 및 감사 결과에 이의 없음.

4) 2008년도 학예연구원회 해외연수 준비상황 보고

○ 해외연수 지역 : 중국 운남성 일대(곤명, 대리 등등)

○ 일 시 : 2008년 1월 20일 ~ 25일(5박 6일)

○ 신청기간 : 2007년 11월 15일까지 신청 마감

○ 인 원 : 30명 내로 제한

5) 제56회 정기총회 회의안건

(1) 2008년도 사업 계획

○ 제58회 춘계 학술발표회 및 제14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8년 4월 16일 ~ 18일

- 장 소 : 강릉대학교 박물관

- 주 제 : (가) "대학박물관의 기록문화"

- 내 용 : 학술발표, 협회 학예연구원회 총회, 유적지 답사 등

○ 제 59회 추계 학술발표회 및 제 57회 정기총회 개최교 선정

- 일 시 : 2008년 10월 16일 ~ 18일
- 장 소 : 이사회 위임
- 주 제 : 이사회 위임
- 내 용 : 학술발표, 협회 정기총회, 유적지 답사
 - 고문화 제 71, 72집 발간
- 일 시 : 2008년 6, 12월 중
- 발간 부수 : 1,200부(회당)
- 예 산 : 인쇄비 6,000,000원(회당)/ 원고심사비 900,000원(회당)

(2) 2008년도 예산심의

(3)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논의

- 제2조 소재지

현 행	개 정 안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를 대한민국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현 행	개 정 안
본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내 3. 이사 : 10인 이내 4. 감사 : 2인	좌동 1. 좌동 2. 좌동 3. 이사 : 14인 이내 4. 좌동

⇒ 회장과 부회장을 당연직이사 포함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자구 수정.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 상향 조정.

- 제12조(임원의 선임 등)

현 행	개 정 안
4. 부회장 및 이사가 임기 중 유고일 때에는 회장, 부회장, 이사의 총수가 8인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4. 부회장 및 이사가 임기중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의 총수가 10인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6. 본회 산하기구인 학예연구원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본회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본회 산하기구의 학예연구원회의 회장과 학예연구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

⇒ 제12조 6의 당연직 이사 부분에 회장 및 부회장 포함.

⇒ 제12조 4항의 내용도 일부 수정의 필요가 있음.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 중 유고 시 현행은 회장, 부회장, 이사의 총수가 8인 이상이 되도록 보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는 이사 총수의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중요 사항 의결 정족수로 인정되는 3분의 2에 미달되므로 보선 필요 하한선을 67%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이 경우 제11조 3의 개정에 의해 이사회 총수는 14인이 되므로 그 71%인 10인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학예연구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학예연구원회 회장 이외에 1인의 학예연구원 이사를 둠.

○ 제15조(임원의 임기)

현 행	개 정 안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이 소속 대학으로부터 박물관장 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본회 임원직에서도 자동 면직된다.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개시는 선출 차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같다. 단, 임원이 소속 대학으로부터 박물관장 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본회 임원직에서 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차기 총회까지 그 직임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과, 본회의 임원은 소속 대학의 박물관장 직에서 면직되면 자동 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시에 다수의 임원이 면직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선 등의 의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개정안임.

⇒ 임원의 임기개시일을 명시하고 박물관장직에서 면직된 임원의 직을 이사회의 결의로 한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인수인계로 인한 공백을 채우고자 함

(4) 정관 변경과 관련된 공증 행위에 대한 의결